

「2023년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공고

「2023년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특허청장

1. 포상 개요

- ☐ (목적)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포상하여 국민의 인식제고, 우수 거래인·단체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 ☐ (주최/주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 (대상) 지식재산 거래 관련 중개·공급·활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 ☐ (포상규모) 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점, 특허청장 표창 3점)
* 상황에 따라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 (포상부문) 3개 부문

분야	부문	대상
지식재산 거래	중개 유공	· IP 거래를 중개하는 민간·공공기관 담당자
	공급 유공	· 산·학·연의 기술·IP를 공급하는 기관 또는 기술이전 담당자
	활용 유공	· IP 거래를 통한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한 기관·기업 또는 임직원

- ☐ (자격기준)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단체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 ☐ (시상식) '2023년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에서 수여(11.2일 예정)

2. 포상 신청

- **(신청기간)** 2023. 9. 11.(월) ~ 9. 22.(금)
- **(신청방법)** 신청서류 한글(hwp)파일 및 증빙서류 스캔(pdf)파일 모두 이메일로 제출(ippto@kipa.org)
- **(신청서류)** 공적조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붙임 1 참조)

* <http://www.kipa.org> → 신청서 양식 다운 → 작성 후 제출

3. 포상 심사

- **(추진일정)** 공개모집 → 포상추천심사위원회(한국발명진흥회)
→ 공적심사위원회(특허청)를 거쳐 표창추천 대상 선정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표창 대상의 추천기준 검증 및 선정·추천

< 일 자 >	< 주요 내용 >	< 세부 내용 >
○ 9.11.~9.22.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특허청, 발명진흥회)	■ 기관 홈페이지, 관계 기관 및 회원사 대상홍보 등을 통한 발굴
○ 10.5. 예정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발명진흥회)	■ 심사위원 : 지식재산거래 종사자 및 발명유관단체 인사, 산학연 기술이전 부서장, 교수 등 5~7인 ■ 심의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추천순위 결정(특허청에 추천) *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조사
○ 10월 초	공적심사위원회 (특허청)	■ 위원장 : 국장급 이상 ■ 심사위원 : 과장급 이상 5~10명 ■ 심의내용 : 분야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및 정부포상 이하 포상자 결정
○ 10월 초	포상대상자 추천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로 정부포상 대상 추천
○ 11.2. 예정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 2023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수여 * IP 거래 컨퍼런스에서 수여 예정

※ 포상규모 및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거래 건수, 거래 금액, 거래 기여도, 공적기간 등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항목 (기준시점 : 2020. 1. 1.~2022. 12. 31.) >

심사항목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 기여도	공적 기간	합계
배점	30점	30점	30점	10점	100점

- ① 거래건수 : 최다 거래합산 건수를 만점으로, 3점 씩 감점, 최저점 10점
 ② 거래금액 : 최고 거래합산 금액을 만점으로, 3점 씩 감점, 최저점 10점
 ③ 거래 기여도 :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우수사례 창출 등 공적에 대한 평가
 ④ 공적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심사 대상의 해당분야 경력

- **(추천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에 따른 추천 제외 대상 (붙임2 참조)

5. 문의처

접수기관	접수처	문의 전화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86

붙임1 신청 서류

[서식1]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 · 계급	
추천 훈격(勳格)	미기재	추천 순위	미기재
공적 분야	중개유공() 공급유공() 활용유공()	공적 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추천인)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구 분	실 적
거래 건수	00 건
거래 금액	000 백만원
※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에 대한 계약서 사본, 수행실적(별도 엑셀 첨부파일 참조) 별도 제출 必 ※ 경상기술료의 경우 입금증 사본 추가 제출 必	
작성예시 (제출 시 본 표는 삭제)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사항 작성내용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발명기술을 단순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사실, 수치를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적 내 용

○ (제목)

- (내용).....
.....
.....
.....

- (내용)
.....
.....
.....
.....

○ (제목)

- (내용).....
.....
.....
.....
.....

- (내용).....
.....
.....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상장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차관표창·상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차관표창·상장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상장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표창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3] ※ 신청자가 “공무원” 인 경우만 작성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 (만 세)		
	漢字		⑥ 군 번(군인)	< 군인의 경우에만 작성 >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자 ☐ 명예퇴직자 ☐ 의원퇴직자 ☐ 기 타					

구 분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년 월 일)
⑧ 일 반 직	~ (년 월 일)	⑬ 교 원	~ (년 월 일)
⑨ 별 정 직	~ (년 월 일)	⑭ 군 인	~ (년 월 일)
⑩ 기 능 직	~ (년 월 일)	⑮ 군 무 원	~ (년 월 일)
⑪ 고 용 직	~ (년 월 일)	⑯ 기 타 ()	~ (년 월 일)
합 계 ㉑		년 월 일	

⑰ 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㉒		년 월 일

⑱ 실 재직기간 (㉑ - ㉒)	년 월 일	⑲ 추천훈종	< 공 란 >
------------------	-------	--------	---------

⑳ 징계, 형벌	종 류	일자	㉑ 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㉔ 기 관 명 :					직인

붙임2 추천 제한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가. 공무원 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휴직중인 자
- 4)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 5)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6)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7)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 표창

-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 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채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채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2016.12.19.)」에 의한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표창 추천가능
 - 다만, 주요비위*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 포함)
 -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 등
-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